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10호

「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년 5월 29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적정부지 확보와 높은 부지매입비로 인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은 주택에서 삼삼오오 모여 지내거나, 다른 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
- 나. 마을회관 건축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회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사항 및 지원기준 신설
(안 제3조 및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4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shjgoods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